등록면허세(면허분)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

과 세 근 거	 지방세법 제23조~제26조, 제34조~제3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~제40조, 제51조~제5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6조~제19조 ※지방세법령 조회: 법제처(http://www.law.go.kr) 	
과 세 대 상	•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	
납 세 의무자	•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 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	
가산금	• 지방세징수법 제30조 • 가산금 :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% 가산하여 징수	

종별	세액	면허 예시	
제1종	67,500원	여행업, 대부업, 은행업, 보험업 등	
제2종	54,000원	주택관리업, 위생처리업, 소독업 등	
제3종	40,500원	통신판매업, 노래연습장업, 의약품판매업 등	
제4종	27,000원	손해사정업, 위탁급식영업, 행정사업 등	
제5종	18,000원	교습소의 설립·운영, 총포의 소지, 세탁업 등	
•동일 면허라도 영업장 면적, 시설 면적, 종업원수, 톤수			
자동차 대수 등에 따라 종별이 구분되어 적용 세율이			
다를	수 있음		

(지방세법 제34조 제1항,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)

구제방법 안내

이의 신청

• 위법·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(자치구세는 구청장, 특별시세는 구청장 경유 후 시장에게 제출)

※ 지방세기본법 제89조~제100조 참조

심사 청구 심판 청구

-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- 심사청구(서울시) : 자치구세
- 심판청구(조세심판원) : 자치구세 · 특별시세
- ※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·행정소송(서울행정법원) 가능 (처분을 안 날·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)

신청 방법

- •서 면: 이의신청, 심사 및 심판청구
- 인터넷: 이의신청, 심사청구만 가능
 - 市 홈페이지: 지방세 이의신청 검색
- 이택스(ETAX): 지방세 이의신청

납부방법 안내

은행 방문

세율

- 시중은행(한국은행 제외), 농협 · 수협 · 신협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, 산림조합
-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(CD/ATM기)
 - 본인: 지방세(공과금) 납부 선택, 통장·카드 넣음
 - 타인: 전자납부번호 선택, 전자납부번호 입력
 - ※ 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

ARS (23人) 30분까지)

- 1599-3900으로 전화 후 ARS안내에 따라 납부 [전자납부번호로 조회납부 방법(예시)]
- 1599-3900 전화걸기 ▷ 지방세 등 조회납부 ① **선택** ▷ 전자납부번호 납부 ① 선택 ▷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#누름 > 신용카드 ① 신한은행 계좌납부 ② 중 선택 ▷ 각종 결제정보 입력 ▷ 결제승인 ▷ 납부완료
- 계좌이체(신한은행), 신용카드(13개사)

납부 매체

- 계좌이체(전 은행), 신용카드(13개사)
- 간편결제: 카카오페이, SSG페이, PAYCO, 삼성페이, 네이버페이, L.pay, 앱카드(7개사)

환급 및 전자납부 등 혜택 안내

지방세 환 급

- 스마트폰(STAX)앱 : 조회 · 신청
- 인터넷 **이택스(ETAX)**, 정부24: 조회 · 신청
 - ※ 환급금 입금계좌 사전 신청가능 (자치구 세무부서 문의)

정기세목 전자고지 전자납부

(마일리지 적립)

- 과세 정보를 종이고지서 대신 E-mail등으로 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시 지급
- 적립액: 건당 30만원 미만 350원, 30만원 이상 850원 ※ 단 30만원 이상이라도 전자고지+자동납부 시 500원만 적립
- 사용: 이택스(ETAX)에서 세금·세외수입 납부, 본인 계좌송금, 기부 등 (ETAX 홈페이지 참조)

정기세목 전자고지 자동납부 (세액차감)

- 정기분 부과 전월 이전 신청자에 한함
- 전자고지만 신청 시 : 건당 150원
- 자동납부(계좌이체, 신용카드)만 신청 시: 건당 150원
-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: 건당 500원

※ 납기내 미납시 차감세액이 추징 됨

홍보